

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
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규선 의원 발의】



2025. 03. 24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92호로 2025년 3월 10일 이규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용어 사용의 긍정적 표현을 지양하고,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영업자등에 대한 권고(안 제6조)

나. 지원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3.12.~2025.3.1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지난 '24년 1월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·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·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¹⁾가 신설됨.
- 이에 따라 올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‘마약’ 등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,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업계가 업소명, 제품명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실시 한다고 밝혔음²⁾.
-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식품명에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및 권고 이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가. 조례안의 체계

1) 제8조의2(마약류 표시·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)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업자 등에게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2) 2025.2.3.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: “식품에 '마약김밥'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를…식약처, 행정지도”

-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책무와 같은 조례 전체의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계획 및 실태조사 규정, 안 제6조는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,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개선사업, 지원,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개선계획 및 실태조사

제 정 안
제4조(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(이하 “개선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.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.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-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등의 남용 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³⁾의 입법 취지에 따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.

3) 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(이하 “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·교육·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(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)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다.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

제 정 안
제6조(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)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.
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에서 영업자 등이 마약류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·광고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, **안 제6조**에서는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.

라. 개선사업 및 지원

제 정 안
제7조(개선사업)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·보급 2.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3.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.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제8조(지원)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, 간판, 제품 포장제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제9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식품 등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**안 제7조**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, **안 제8조**에서는 개선을 위해 메뉴판 등 표시 변경으로 발생할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4)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서는 표시·광고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당 조례안은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.

○ 종합의견
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류 남용 예방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함.
- 또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 규정 신설('24.1.2.)로 인해 구청장의 권고 및 지원 규정의 근거가 상위법에 존재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마약류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개선 사업은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미 마약류 등의 용어로 표시·광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재원 마련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, 「서울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

4)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(이하생략)

조례(2024.11.21. 제정)」는 “상품명”, 본 조례안은 “식품명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적 업무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도 각각 구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

제8조의2(마약류 표시·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)

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업자 등에게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(생략)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·교육·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생략)